

## 의료급여사업(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)
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적기에 확보·지급하여 진료기관의 진료 기피, 불친절을 해소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고취

### 예 산 총 괄

(단위 : 천원)

2014 최종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(B-A)	(B-A)*100/A
(×408,225,655) 826,700,000	(×385,442,486) 772,900,000	(×△22,783,169) △53,800,000	△6.50%

### 사 업 설 명

사업목적

-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의료급여 비용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의욕 증진

사업근거 : 의료급여법 제25조

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
- 규 모 :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지원
  - 의료급여수급권자 : 225,056명('14. 11월말 기준)
  - 1종 : 159,829명(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인간문화재, 북한이탈주민 등)
  - 2종 : 65,227명(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)
- 사업기간 : 2015. 1~12
- 사업내용
  -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예탁, 자치구 사례관리사업비 교부
 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,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
- '15년도 소요예산 : 772,900,000천원
- 재원분담비율 : 국비 50%, 시비, 50%

추진경위

-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부터 시행된 '의료보호제도' 를 모태로 하고 있음.

-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‘의료급여법’의 발효로 시작되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임
- 2003. 5월부터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위하여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
  -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
  -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등

2015년도 예산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(×408,876,934) 819,303,867	(×408,225,655) 826,700,000	(×385,442,486) 772,900,000	(×△22,783,169) △53,800,000
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	(×6,773) 13,546	(×30,401) 60,802	(×15,058) 30,116	(×△15,343) △30,686
사무관리비	(×1,145,232) 2,290,463	(×1,220,035) 2,440,070	(×1,256,860) 2,513,720	(×36,825) 73,650
민간위탁금	(×402,325,951) 806,201,901	(×400,765,480) 811,779,650	(×377,971,484) 757,957,996	(×△22,793,996) △53,821,654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×5,398,978) 10,797,957	(×6,209,739) 12,419,478	(×6,199,084) 12,398,168	(×△10,655) △21,310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-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: 30,116천원
  -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0,116천원\*1명 = 30,116천원(2014년 인건비 대비 29,239,440원 대비 3%증가)
- 사무관리비 : 2,513,720천원
  - 의료급여비용 심사수수료 1,495,150천원
  - 의료급여비용 위탁수수료 1,018,570천원
- 민간위탁금 : 757,957,996천원
  -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(공단위탁금) : 757,957,996천원
    -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: 753,029,950천원
    -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: 4,819,576천원
    - 출산전 진료비 지원 : 108,470천원
- 자치단체경상보조금 : 12,398,168천원
  - 자치구 보조금 : 12,398,168천원
    - 일반운영비, 장애인보장구,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

사업추진 절차

- 집행절차
  - 민간위탁금
    - 기본계획 수립(보건복지부) → 민간위탁금(보건복지부→시→건강보험관리공단 등)
    - 의료비 지급(건강보험공단→각 의료기관) → 정산·보고(보건복지부←서울시←건강보험공단)
  - 자치단체경상보조금

- 기본계획 수립(보건복지부) → 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) 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 
→ 정산·보고(시←자치구)
- 사무관리비
  - 기본계획 수립(보건복지부) → 수수료 신청(시←심사평가원, 건강보험관리공단)

사업효과

-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

2012년도	· 의료급여수급권자 217,707명 의료급여비 지원
2013년도	· 의료급여수급권자 219,232명 의료급여비 지원
2014년도	· 의료급여수급권자 225,056명 의료급여비 지원

- 향후 기대효과

- 의료급여비용 적기에 확보·지급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도모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- 추진방향

- 의료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에 차질없이 지속 지원
-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

-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기본계획수립	2015.01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5.01~12	772,900,000	월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15.12~2016.03	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복지건강본부	복지정책과	생활보장팀	강재신 (2133-7346)	주무관	최기홍 (2133-7348)

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